

하동군의회 규칙 제 16 호
제3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규칙
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4월 10일

하 동 군 의 회 의 장



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6항 중 “「하동군 위원회 실비 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9조의2(자문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2.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3.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

제100조제4항 중 “「하동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0조(심사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「하동군 위원회 실비 조례」에 따라 수당·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60조(심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-----.</p> <p>제99조의2(자문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.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.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

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100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하동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100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「하동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 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